

제4편 할부거래법

제1장 할부거래 총론

1. 할부거래의 의의와 특징

(1) 의의 : 소비자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, 그 대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.(->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도 포함)

->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·대량소비 사회가 도래하면서,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된 판매방식.

cf) 소비자 신용(consumer credit) :

① 소비자금융(consumer finance) ->대부업 규제 등

② 소비자판매신용(sale and credit)

(2) 특징

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장래로 연기.

② 장래로 연기된 대금은 분할해서 지급. ->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외상매매와 구별.

③ 매매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인도 -> 부동산 계약 등에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의 형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것과 구별.

④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하는 경우가 다.

2. 할부거래의 기능

(1) 긍정적 기능

- 소비자 :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용이하게 고가의 물품을 구매.

- 기업 : 상품의 대량생산·대량판매 기회 제공.

=> 편리한 대금결제방식 (현재의 소비와 장래의 지급 사이에 시간이 개입된 계약).

(2) 부정적 기능

① 충동구매 - 개인의 지급능력 초과(과잉수요창출) -> 개인파산

② 약관 이용에 따른 복잡한 계약내용 -> 계약체결상 정보제공의 미흡, 철회권의 제한, 고율의 할부수수료 및 연체료, 부당한 추심행위 등

3. 할부거래의 유형(§2)

(1) 직접 할부계약 : 할부판매업자가 자기의 신용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
(2) 간접 할부계약 : 할부판매업자 이외의 제3자(신용제공자)가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

는 경우(신용카드거래, 리스계약 등)

제2장 할부거래법

1. 할부거래법의 제정과 목적

(1) 제정 경위

- 할부계약의 소비자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-> 할부계약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은 1986년 도소매업진흥법 .

-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1. 12. 31 할부거래법 제정.

(2) 할부거래법의 목적(§1)

-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.

-> ‘거래질서법적 성격’과 ‘소비자보호법적 성격’을 함께 가지고 있다.

2. 적용범위(§2)

(1) 적용대상

① 할부계약의 목적물 : 동산과 용역 -> 부동산 제외(령 §2).

② 할부계약의 할부기간 및 횟수

- 후불식)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-> 신용카드 일시불은 할부계약에서 제외.

- 선불식):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-> 장레·혼레 서비스에 한정

③ 할부계약의 형식

- 후불식): 대금완납 전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

- 선불식): 소비자가 적금형태로 할부금을 납입한 후에 물품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을 받는 할부계약(§2조 제2호, 제4호)

④ 할부계약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 -> 개인과 개인,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할부계약은 적용되지 않음.

-> 소비자의 개념(§2 제5호) :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/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(령 §2 :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,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)

⑤ 직접할부계약(소비자가 대금을 할부거래업자에게 직접 지급)과 간접할부계약(신용제공

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,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) 모두 적용.

(2) 적용제외

1)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(§3 제1호) -> 소비자 이익보호 목적.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.

(판례) ‘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계약의 체결’ ->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‘영리를 목적’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(대판 2006. 7. 28, 2004다54633).

2) 성질에 의한 제외(§3 제2호 -> 령 제2조)

① 농·수·축·임·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. ② 의약품.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. ④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 및 어음. ⑤ 부동산

cf) (구)할부거래법상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·제공되는 목적물은 철회권의 제한 대상으로 변경.

3. 계약 성립단계 : 할부거래업자의 의무

(1) 할부거래의 표시·고지의무(§5)

-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, 현금가격과 할부가격, 각 할부금의 금액·지급횟수 및 시기, 할부수수료의 연간실제요율(현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: 연 30%이내 §7) , 계약금,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되는 비율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.

-> 대금지급기간이 장기이고, 내용이 복잡

cf) 할부계약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.

(2) 할부계약서의 작성·교부의무(§6)

- 할부계약은 법정된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,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(서면주의 : 계약방식의 자유에 제한).

->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특약이 없으면,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. 다만 계약은 성립 -> 과태료 제재(§53 ④ 제2호).

4. 소비자의 철회권(§8 - §10)

(1) 철회권의 의미

-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진정한 구입의 의사와 필요성을 재고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. (재고기간 / 냉각기간 /cooling off : ‘청약’의 철회가 아니라 ‘계약’의 해소).

- 인정이유 : ①소비자의 충동구매 ②판매전문가의 적극적인 판매공세 -> 자기결정권 보장.

- 계약 해제와 차이점 : 철회권의 행사로 인해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, 계약금의 포기 등과 같은 불이익이 없음.

* 철회권의 고지 : 철회권과 행사방법이 기재된 계약서 교부(§6 ① 9호) -> 위반시 과태료처분에 그침(§53) : 실제법적인 효과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제재수단 강구 요망.

(2) 철회권의 행사기간

- 소비자는 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’로부터 7일(§8 ①).

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‘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’

②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/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/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앞의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-> ‘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’

③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->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

④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->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

-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및 그 시기, 목적물의 인도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(§8 ⑤).

(3) 철회권의 인정범위

- 목적물의 성질 및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(§8 ②)

1)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.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외

2)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(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경우) : ①선박 ②항공기 ③열차차량 ④건설기계 ⑤자동차 ⑥냉동기, 에어컨, 보일러(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물건)

3)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

4)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(음반, 소프트웨어)

5) 시행령(§6 ②) : ①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(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) ②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

=> 제2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의 제공의무 부담(§8 ⑥) -> 위반시 철회권 인정(§8 ② 단서).

(4) 철회권의 행사방법

1)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철회(§8 ③, ④)

- 소비자는 위 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 ->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 발생 (민법 제111조 - 도달주의의 예외).

2) 신용제공자에 대한 철회

- 소비자는 재고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 발송(§9 ①)

-> 해태한 경우 :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(§9 ② 본문). 다만 재고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청약의 철회에 의해 할부금지급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항 가능(§7 ② 단서).

(5) 철회권 행사의 효과

① 소비자의 목적물 반환(§10 ①)

②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 반환(§10 ②) : 연 20%의 지연배상금.

③ 용역이 이미 제공된 경우 : 할부거래업자는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(§10 ③) -> 과도한 대금지급으로 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)

④ 간접할부 : 할부업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 / 신용제공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환급(§10 ④)

- 신용제공업자의 조치(§10 ⑤)

⑤ 청약철회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신용불량자 조치 등의 소비자에게 불이익 금지(§10 ⑧)

⑥ 재화등의 사용이나 소비의 경우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급 비용에 상당한 금액 청구 가능 (§10 ⑨)

⑦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 부담하며 /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·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(§10 ⑩)

(6) 철회권의 포기

-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가 개별약정이나 약관을 통해서 철회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것을 약정한 경우 : 소비자에게 법령의 내용보다 불리하므로 무효(\$43).

(7)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

-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도 청약 철회 업무 계속(\$17)

cg) 소유권유보 특약

① 필요성 : 대금회수 확보수단 (\$6 ① 제8호)

② 법적 성질 : 소비자의 대금지급을 정지조건으로하는 소유권 이전 -> 대금지급 완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(대판 96. 6. 28, 96다14807)

- 소비자는 '물권적 기대권'을 갖고,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에 접근 -> 점유권과 이용권을 가지며, 이는 사실상의 '소유자로서의 이익'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

③ 위험부담 : 채무자 위험부담주의(민 §537) -> 소비자는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여 소유자로서의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

④ 처분권의 문제 : 특약으로 소비자의 처분 금지 조항은 유효

5. 불공정한 계약의 내용통제

- 할부거래 약관에 포함된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, 손해배상, 소비자의 항변권 등과 관련된 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별도 규정

(1)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

-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,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에야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\$11 ①).

-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 부담 -> 동시이행(\$11 ②).

-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: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해제한 후에 반환 청구 가능(\$11 ③) -> 자력구제의 한 형태인 자력회수의 금지.

(2)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

- 우월한 지위의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

i) 할부금 지급지연 손해배상액 : 지연된 할부금 × 이자제한법상의 최고한도 범위안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율(\$12 ①)

ii)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 : 통상비용 / 할부가격 등 + 지연손해 배상액 (\$12 ②)

-> 손해배상액의 예정·위약금, 명칭·형식을 불문하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(\$12 ③) / 할부거래업자 등은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(\$12 ④).

(3) 소비자의 기한이익의 상실

i)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지체시 약관에 나머지 할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약관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,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사유를 제한(\$12 ①)

① 소비자는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,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
②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 :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-> 외국이민을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(?) -> 기한전 지급이용

ii)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->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의 공제(\$12 ②)

(4) 소비자의 기한전 지급

- 소비자가 기한 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의 합계액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(\$14)

(5) 소멸시효

-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(\$15)

(6) 소비자의 항변권

- 계약기간중 할부판매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된 경우 소비자가 할부판매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항변권.

1) 항변사유 : 직접할부계약(\$16 ①)

① 할부계약이 불성립·무효 또는 취소·해제 및 해지된 경우,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서에 적힌 인도시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, ③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④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할부거래업자의 불법행위 포함 여부 문제)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

cf) 직접할부계약의 항변사유 제한은 불합리 (예,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 불비) -> 민법상의 모든 사유로 확대(?)

2) 항변권의 접속 :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

- 할부가격이 10만원(신용카드의 경우 20만원) 이상인 경우로 한정 ->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지급거절 가능(\$16 ②)

-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할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(\$16 ③) -> 기지급 할부금의 반환 청구 문제 발생

-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한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 발생 (§16 ④)
-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항변권 해당 여부에 검토 후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/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 불가의사 서면 통지 (§16 ⑤)
- 통지 해태시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(§16 ⑥)
- 할부금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용불량자 처리 등의 불이익 금지 (제16 ⑦)
- cf) 신용제공자가 할부판매업자와 동일시되는 경우 (예, 신뢰를 준 경우, 판매업자가 카드사의 통제를 받는 경우 등) 항변권 사유제한의 타당성 문제

(6) 편면적 강행규정

- 소비자의 철회권,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해제 제한,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, 소비자의 기한이익상실,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
- > 계약의 내용이 할부거래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(§43)

(7) 전속관할

- 제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 (§44) -> 약관규제법 §14 특별규정

6. 선불식 할부거래

-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(§18 - §20) : 시도지사
-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(§23)
-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명시 (§24, 25)
- 선불식 거래업자의 부도·폐업에 대비한 선수금보전 : 금융기관 예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·보험계약·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 (§27)
- 선수금보전 금액은 전체 선수금의 50%.